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金炳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366 발의연월일: 2022. 9. 15.

발 의 자: 金炳旭·김미애·김선교

김학용 • 박성민 • 백종헌

서일준 • 이명수 • 이태규

정경희 · 조경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교육대상자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현재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대학별 장애학생규모나 학생별 지원 사항 등이 상이하여 개별 대학 차원에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 재학 중 실질적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앙 단위의 전문적·안정적 지원체계 구축이필요함.

이에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33조의 신설).

법률 제 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고등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분석
- 2.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관련 자료 개발·보급
- 3. 장애학생의 진로 취업 지원
- 4. 제30조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 5.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교직원 등 연수 지원
- 6. 제13조에 따른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운영 및 컨설팅
- 7. 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고등교육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u>	(1)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라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한다. (2) 고등교육센터는 다음 각호의업무를 수행한다. (3) 고등교육센터는 다음 각호의업무를 수행한다. (4) 장애학생 고등교육 자원 관련자료 개발・보급 (5) 장애학생의 진로・취업 지원선터 운영 지원선터 운영 지원(5)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교직원등 연수 지원(6) 제13조에 따른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운영 및 컨설팅(7) 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지원 사업

-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① 고등교육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